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및 환급 절차 등 근거 마련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3322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및 환급 절차 등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5. 9. 26.

다. 회 부 일: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및 환급 절차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소멸시효 및 기금 귀속 근거 등을 마련하며, 환급청구권 통지 의무 및 환급 관련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출국납부금</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u>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	③ ----- ---- <u>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은 ----- -----

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사람은 -----

-----.

⑤ (현행과 같음)

⑥ ----- 출국납부금-----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등) ①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예정대로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출국납부금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이하 “환급청구권”이라 한다)은 출국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은 기금에 귀속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및 환급청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출국납부금 부과 등 업무의 위탁) ① -----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 ② ----- ----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
---	---

다. 검토사항

-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이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공항운영자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¹⁾.
-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항공권 구입 시 항공사에 함께 결제하게 되고, 탑승객 출국 후 공항운영자가 항공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며,
-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자가 선박 탑승 터미널에서 납부하고 이를 항만공사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 그런데,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기 위하여 항공권을 구입한 탑승객이 항공권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공권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 취소·환불과 별개로 출국납부금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소멸시효 완성 시 기금 귀속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환급청구 관련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환급 업무의 위탁 근거를 둬으로써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만, 동 개정안에는 환급 청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확보 근거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유사한 취지로 김성원의원, 강대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출국납부금과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 등을 규정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또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유사 발의안]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	주요내용	발의일	소관 위원회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91)	김성원 의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등)	'25. 1. 2.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30)	강대식 의원	출국납부금을 환급청구권 및 소멸시효 등 근거 마련,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25. 3. 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44)	강대식 의원	공항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청구권 신설 및 소멸시효 설정, 소멸시효 완성된 공항시설사용료의 공항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귀속,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검사, 반환청구권의 사전 통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안 제32조, 제32조의2, 제55조,	'24. 8. 12.	국토교통 위원회

		제69조)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45)	강대식 의원	소멸시효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 용료를 공항계정에 귀속 (안 제6조)	'24. 8.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3)	이연희 의원	공항시설사용료 반환청구권 신설 및 소멸 시효 설정, 소멸시효 완성된 공항시설사용 료의 국고 귀속, 반환청구권의 사전 통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안 제32조의2, 제69조)	'24. 11. 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53)	정부 제출	공항시설사용료 반환청구권 신설 및 소멸 시효 설정, 소멸시효 완성 시 공항회계(교 통시설특별회계) 귀속, 반환청구권의 사전 통지(위반 시 과태료)	'25. 4. 8.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54)	정부 제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시설사용료의 교 통시설특별회계 귀속	'25. 4. 8.	

- 한국항공협회는 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BP Tax²⁾로 분류되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청구 관련 법안이 심사 중인바, 동일 취지인 동 개정안 또한 타 법률안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유기적·일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해외 주요 항공사 역시 항공권 유효기간(1년) 내 여객의 요청에 따라 환급 처리 중이므로 동 개정안에 따라 국적사-외항사 승객 간 소멸시효(5년) 내 환급 청구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BP tax(Boarding Pass tax) = 출국납부금(문화체육관광부) + 공항시설사용료(국토교통부)

문 의 처
02)6788-5377